



배포: 제한

2023.3.27

원본: 영어

77차 정기총회
안건 18
지속 가능한 발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적도 기니,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로코, 세네갈, 슬로베니아와 스페인.* '결의안 초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총회는

2015년 9월 25일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 결의안 70/1를 상기하고,

또한 2015년 7월 27일 제3차 유엔개발재원 총회(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의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결의안 69/313을 상기하고,

2016년 12월 23일 가치사슬, 특히 공식 및 비공식 경제에서 활동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통해 영세기업,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담은 부속문서 '새로운 도시 의제' 관련 결의안 71/256를 상기하고,

2021년 12월 16일 협동조합이 다양한 형식으로 토착민, 지역 공동체 및 모든 사람의 경제사회 발전 참여를 최대한 증진하고 이들의 참여가 사회경제 발전을 강화하고 빈곤 및 기아 종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회적 발전에서의 협동조합' 결의안 76/135를 상기하며,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가 활동이 취약계층의 생산적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이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사회변화를 추동하

* 후원국 목록에 변동사항 발생 시, 회의 공식 기록에 반영 예정

** 총회가 본 안건과 관련해 행동을 취하기 위해 본 회의에서 안건 18 직접 심의 결정 필요

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의 악영향, 지정학적 긴장과 분쟁으로 경제의 여러 취약점들이 드러나고 기존의 불평등이 악화되어 더 깊이 있고 원대하며 변혁적이고 통합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무총장 보고서, '우리 공동의 의제'를 통해 사무총장이 다국적 기업에서부터 영세,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더 넓은 범주의 기업들이 성과와 번영의 척도를 재고하는 활동에 맞는 사업모델을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기후행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는 점을 주지하며,

2022년 6월 채택된 국제노동기구의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관련 결의안이 사회연대경제가 자발적 협력과 상호부조,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자율권과 독립 그리고 자산과 자원, 이윤의 활용과 분배에 있어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원칙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 일반 이익에 기여하는 경제활동과 사회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단체, 그리고 여타 주체들을 포괄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장기적 실행력과 지속가능성, 비공식경제에서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활동하며, 양질의 일자리와 민생 달성이라는 가치, 사람과 지구, 평등과 공정, 상호의존, 자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과 일치하는 가치,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기능에 내재된 본질적 가치를 실천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국가적 상황에 따라, 사회연대경제가 협동조합, 사단, 공제회, 재단, 사회적기업, 자조집단(self-help groups) 그리고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원칙에 입각해 활동하는 여타 주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연대경제가 특히,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보건의료, 교육과 역량 훈련, 환경보호관련 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촉진, 성 평등 증진, 여성의 권리 향상, 적합한 금융과 지역경제발전으로의 접근성 확대,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노동권과 사회보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지방,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적 거버넌스와 정책입안, 모든 인권을 증진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달성과 현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회연대경제가 양질의 일자리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직장 내 기본권을 포함한 국제노동 기준 발전, 모두를 위한 생활수준 향상, 재교육(reskilling)과 직무향상교육(upskilling) 분야를 포함해 사회적 혁신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또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농촌 지역 여성을 포함한 여성, 청년, 장애인, 취약계층의 권익 향상에 있어 지역적 기반으로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공동체 및 사회적 결속 구축, 다양성과 연대 강화, 지역 공동체와 토착민들의 전통지식과 문화 보호 및 존중에 있어 사회연대

경제 주체의 역할을 인정하며,

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과 사회환경보호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과 자원보다는 개인의 사회정치적 권익 향상을 중시하는 사회환경적 회복력과 경제적 효율성 간의 새로운 균형을 찾음으로써 사회연대경제가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회연대경제가 빈곤 종식과 사회변혁을 추동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보장하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는 목표(Leave no one behind)와 2030 아젠다 및 지속가능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사회연대경제 종사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과 동맹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잠재력과 기업가적 역량 및 관리자적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키우고 사회적 혁신과 기술적 혁신, 참여적 사업 모델을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위한 세계시장 및 기관 자금을 위한 접근성 확대 수요를 충족하는 방법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증진에 있어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인정하며,

사회적 대화와 모든 노동권 보호가 사회 전반의 결속력에 기여하고 경제가 잘 기능하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1. 사회연대경제에 적합한 구체적인 법체계를 개발하고, 가능하다면 국가 통계 작성에서 사회연대경제의 기여를 가시화하고 재정과 공공조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교육 과정과 역량구축 및 연구 이니셔티브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인정하고, 금융서비스와 자금에 대한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접근성을 더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창업과 기업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회원국들이 국가적 상황과 계획,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로서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가, 지방, 지역적 전략, 정책과 프로그램을 촉진 및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정책입안 과정에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연대경제를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의 도구로 개발하기 위한 일관되고 적합한 정책 수단 및 프레임워크를 개발, 시행 및 평가하고 회원국들의 요청과 유엔 각 기관의 임무에 따라, 회원국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 국가팀(United Nations country teams)을 포함한 유엔개발체제(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system)의 관련 기관들이 특히 유엔지속가능발전 협력체계 등에서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수단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장려하고, 이러한 점에서 유엔 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UNTFSS)의 활동을 인정한다.
3. 다자, 국제 그리고 지역 금융기관 및 개발은행들이 개발의 모든 단계에 신·구 금융 상품

과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와 포용적이고 일자리가 풍부하며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회복을 달성하는 데 있어 사회연대경제가 기여함을 고려하면서, 사무총장이 기존의 자원 내에서 유엔 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UNTFSSSE)와의 협업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안건 하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라는 제목의 논의사항을 79차 총회 잠정의제에 포함할 것을 결정한다.